

KKCC 회칙

제정 2005. 2. 28.

개정 2007. 2.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우리회는 Knoxville Korean Catholic Community (낙스빌 천주교 한인공동체, 이하 “KKCC”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우리회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인 복음화를 실현하고, 천주교 신앙의 발전과 한인 신자들간의 유대를 꾀하는 데 있다.

제 3 조 (성격) 우리회는 주임 신부님이 상주하실 때까지 교회법에 따라 본당 사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공동체이다.

제 4 조 (소재지) 우리회는 Knoxville, Tennessee, 미국에 소재한다.

제 2 장 구성원

제 5 조 (구성원) ① 우리회는 Knoxville 과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천주교 한인 신자와 예비자 중 별지 1 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구성한다 (가족 포함).
② 모든 구성원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회의 정기적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 6 조 (자격 상실) ① 구성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계속하여 우리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장은 사목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성원의 자격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제 3 장 운영조직

제 7 조 (조직) 우리회의 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목회와 감사, 각 구역장을 둔다.

- 제 8 조 (사목회의 구성) ① 사목회는 회장과 부회장, 7 개 부(성모회 포함)의 부장과 구역장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사목회의를 주관하고, KKCC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각 부의 업무를 지원, 활성화한다.
- ④ 각 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부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준비하고 수행하며, 문서의 처리와 서기 업무를 담당 한다.
 2. 교육부는 신자 교육과 피정, 교육자료의 생산, 보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전례부는 전례 교육과 전례봉사자 선정, 성가 지도, 제단 장식 업무를 담당한다.
 4. 회계부는 재정의 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부는 공동체 웹사이트의 관리와 홍보 전반을 담당한다.
 6. 친교부는 구성원간 친교업무와 공동 행사시 친교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성모회는 우리 회의 아동, 여성 교우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와 공동 행사시의 음식준비 업무를 주관한다.

- 제 9 조 (사목위원의 임기) 사목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한 직후의 그 다음 회기에는 재연임할 수 없다.
 2. 다른 사목위원들의 임기는 회장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중에 보선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본다.

- 제 10 조 (사목위원의 선정) ① 사목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한다.
1. 회장은 신앙심이 깊고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 구성원 중에서 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2. 부회장과 각 부장은 신앙심과 활동력, 봉사정신을 갖춘 구성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구역장은 선출 즉시 사목회장의 인준을 거쳐 사목위원이 된다.
- ② 사목위원이 6 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목 활동에 불참하거나, 신자로서의 생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회장은 사목회의를 거쳐 그 구성원의 사목위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제 11 조 (감사) ① 감사는 우리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는 회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구역장) ① 구역장은 관할구역내 소공동체 모임을 대표하며(이하 “구역회의”라 한다), 구역회의를 주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구역장의 임기는 제 9 조제 2 호에 불구하고 1 년으로 하며, 각 구역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의의 종류) 우리 회의 회의는 총회와 사목회의, 구역회의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 ① 총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소집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 월에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KKCC 회칙의 제정과 개정, 폐정에 관한 사항
2. 매 회계연도의 예산, 결산
3. 회장과 감사의 선출
4.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
5. 기타 우리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 15 조 (사목회의) ① 사목회의는 회장이 주관하며 월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사목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총회 부의사항과 공동 행사 등 주요 사항
2. 교무금의 산정
3. 구성원과 사목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역대 전임회장은 사목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6 조 (구역회의) ① 구역회의는 구역별로 구성된 구성원의 소공동체 모임을 의미하며, 각 구역장이 주관하고, 매월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역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는 신앙생활의 실천
2. 우리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토론과 건의
3. 구역내 구성원간의 유대 강화

제 17 조 (의사결정) ① 총회와 사목회의는 참석대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② 모든 구성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그 의결권은 20 세 이상인 자(미국연령 기준)에게 국한한다.

제 18 조 (월례회) 모든 구성원의 공동 기도와 교리공부를 위해 월 1 회 월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수입) 우리 회의 수입은 구성원의 교무금과 헌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교무금) 교무금은 회장이 사목회의를 거쳐 정한다.

제 21 조 (지출) 우리 회의 재정은 교회에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하며, 그 지출결정은 사목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 사목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바 있는 정기 반복적인 지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 2 호, 2007. 2. 25)

제 1 항 (시행일자) 이 회칙은 200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항 (사적 이용 금지) 우리 회의 모든 회의나 행사는 복음화 이외의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3 항 (규칙의 해석) 이 회칙과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해석은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에 의한다.

제 4 항 (향후 조치) 우리 회에 주임신부님이 상주하는 시점부터 이 회칙은 자동으로 말소되며, 신부님과 상의하여 사목회는 재구성하고, 재정은 교회에 귀속한다.